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나431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나4313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1가단530050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남지혜

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지

담당변호사 조규현

변론종결 2024. 6. 11.

판결선고 2024. 8. 1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1가단530050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채권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으로 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후에 피고가 C에 공급한

물품대금채권과 ②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전부터 피고가 C에 공급한 물품대금채권이 있다.

그런데 위 ① 채권은 자금난에 처한 C의 대표이사 B이 피고로부터 염료를 계속 공급받아 염료 제조 및 판매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②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 전에 성립한 기존 물품대금채권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위 ②

채권을 위한 담보설정은 위 ① 채권의 담보설정과 동일한 목적 하에 일련의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C의 사업 계속을 달성하기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아니하므로 기존 채무인 위 ② 채권을 위한 담보설정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등이 아니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2, 3,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C에 공급한 물품은 염료 등이고, C의 피고로부터의 매입 규모는 2021년 1월 55,682,495원, 2021년 2월 66,000원, 2021년 3월 17,165,500원, 2021년 4월 9,077,750원, 2021년 5월

10,461,000원인 사실, ② C의 대표이사 B은 2021.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2021년 6월 당시 피고의

C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은 425,560,441원이었던 사실, ③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후

피고가 C에 공급해준 물품은 2021년 6월 3,619,000원, 2021년 7월 6,776,000원으로 합계

10,395,000원에 불과하고 곧이어 거래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 또는 B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피고의 C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은 425,560,441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3억 원에 불과하여, 통상 채권원금을 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기존 물품대금채무의 담보 외에 향후 외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품대금채무까지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C의 사업 규모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내역과 공급량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이후 피고와의 거래가 감소하였고 곧이어 거래가 중단됨으로써 담보제공에 상응한 계속적 물품공급의 실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의 대표이사 B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피고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물품대금채무 및 장래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기보다는 단순히 기존 물품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연정, 판사 안승호, 판사 최복규

별지